



교육감 규정

번호: A-650

제목: 벼룩시장

항목: 학생

발행: 2009년 6월 29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1998년 5월 1일자 교육감 규정 A-650를 대체한다.

본 규정은 공립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 조성이 주된 목적인 벼룩시장과 벼룩시장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뉴욕시 교육청 소유 건물이나 부지에서 주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변경 내용:

- 행사기간이 12일 이상인 벼룩시장 기안은 반드시 FACE와 해당 수퍼인텐던트가 검토하여 이 행사가 학교의 이익에 최선인지 판단해야 한다.
- 벼룩시장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학부모회의 보고 의무가 조정되었다.
- 벼룩시장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학부모회가 본 규정에 명시된 재무 책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벼룩시장에서 조성된 기금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될 수 있다.
- 경쟁 입찰을 요하지 않는 벼룩시장 개설 최대 한도 기간이 한 학년도 당 십(10)역일에서 십이(12)역일로 증가되었다.
- 학교에서 벼룩시장 운영을 위한 계약 목적으로 학부모회로 구성된 업체에 경쟁 입찰 예외를 허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1역년에 12일 이상 운영되는 벼룩시장은 반드시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작성된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감 규정

번호: A-650

제목: 벼룩시장

항목: 학생

발행: 2009 년 6 월 29 일

요약

본 규정의 목적은 공립학교들이 기금 조성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공립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금 조성이 주된 목적인 벼룩시장과 시티마켓들을 뉴욕시 교육청("DOE") 소유 건물이나 부지에서 주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다. 본 규정은 여기에 정의된 벼룩시장과 시티마켓에만 적용된다. 기타 모든 학교 기금 조성 활동은 계속해서 관련 교육감 규정에 의거한다.

I. 서론

- A. 본 규정의 목적은 후원 학부모회 벼룩시장 운영이나 운영 계약 체결 절차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 B.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운영을 위한 DOE 소유 건물이나 부지 사용은 해당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이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시작되고 운영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 C. 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 및 벼룩시장 운영자를 포함한 사설 업체가 얻는 이득은,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이러한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으로부터 얻는 수익에 부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아닐 경우, DOE 는 소유 건물이나 부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 D. 행사를 후원하는 학부모회는 반드시 최초 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하기 전에 DOE 의 가정 및 커뮤니티 지원실("FACE")에 12 일 이상 실시되는 벼룩시장 개설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행사가 학교의 이익에 최선인지 판별되어야 한다.

II. 용어 정의

- A. 벼룩시장

“벼룩시장(flea market)”이란 용어는 학교 정규 일과 시간 외의 시간에 DOE 소유 건물이나 부지에서 진행되는 상행위로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며, 참여 업체들로부터 DOE 소유 시설 사용료를 징수 및/또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후원 학부모회에 주어 뉴욕시 공립학교(들)에 기부하도록 하는 행사를 말한다.

B. 시티마켓(City Markets)

상기 “벼룩시장”의 정의에 속하는 상행위이나, 그 밖의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행정 명령(예, 뉴욕시 환경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린마켓)에 의해 시행되는 행사로서 차후 종합적으로 “시티 마켓 프로그램”으로 칭한다.

C. 후원 학부모회

“후원 학부모회(Sponsoring Parent Association)”란 용어는 교육감 규정 A-660 에 명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학부모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뉴욕시 공립학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1) DOE 소유지에서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 운영; 또는 2) 사설 업체와 계약을 맺고 DOE 소유지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게 함. 이 용어는 더 이상 본 규정 외에서는 그 어떤 법적 또는 기타 의미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III. 1-12 일간 지속되는 벼룩시장 운영 절차

A. 연간 하루에서 십이(12)일간 지속되는 벼룩시장을 DOE 소유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허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상기 제한된 기간의 벼룩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후원 학부모회는 경쟁적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후원 학부모회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사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벼룩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3. 사설업체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할 경우 본 규정 섹션 IV 에 명시된 계약 요건을 준수하는 계약이 체결될 때만 가능하다.
4. 후원 학부모회는 반드시 벼룩시장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용처를 명시한 간략한 서한을 작성하여 벼룩시장을 유치 및/또는 수익을 공유하게 될 학교(들)의 교장(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원 학부모회는 학교장의 서면 허가서를 수신한 뒤 반드시 관련 수퍼인텐던트 및 FACE 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수퍼인텐던트 또는 FACE 는 업체(들)/운영자(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이익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6. 벼룩시장의 모든 업체들은 반드시 적절한 면허와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7. 후원 학부모회가 벼룩시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금전 및 로열티는 반드시 예산에 잡혀 교육감 규정 A-660 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IV. 경쟁 입찰 절차/사업 제안 요청서("RFP")를 통해 운영되는, 기간이 12 일을 초과하는 벼룩시장의 운영

- A. 1 년에 십이(12)일을 초과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후원 학부모회는 반드시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한 벼룩시장 운영자("운영자")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후원 학부모회는 우선, 벼룩시장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용처를 명시한 간략한 서한을 작성하여 벼룩시장을 유치 및/또는 기금이나 로열티를 공유하게 될 학교(들)의 교장(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원 학부모회는 학교장의 서면 허가서를 수신한 뒤 반드시 관련 수퍼인텐던트 및 FACE 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수퍼인텐던트 또는 FACE 는 업체(들)/운영자(들)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이익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C. 후원 학부모회는 반드시 업체 선정 기준을 명시한 RFP 를 작성해야 한다.
 1. 구체적으로 RFP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된다:
 - a. 벼룩시장 운영에 있어 벼룩시장 운영자의 의무.
 - b. 계약 제안이 획일 요금에 기준하였는지 아니면 운영자의 벼룩시장 총수익의 일정 비율에 기준하는 것인지 명시하고, 총수익에서 최소 금액의 수익금이 후원 학부모회에 보장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 계약 제안은 고려되지 않는다.
 - c. 계약 제안이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식일 경우, 여기에는 반드시 총수익이 어떤 식으로 기록, 보존되며, 차후 후원 학부모회 및 DOE 검토 시 어떻게 제출될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d. 후원 학부모회는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한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나, 후원 학부모회는 RFP 에 명시된 추가 기준에 의거하여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업체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 후원 학부모회는 이러한 기타 기준에 근거하여 업체를 선정할 사유(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 D. DOE 의 조달부(Division of Contracts and Purchasing)에서는 RFP 를 City Record 에 열흘(10)간 게재한다.

- E. DOE 조달부에서는 밀봉된 계약 제안서를 지정된 계약 제안 공개 일자에 개봉한다.
- F. 후원 학부모회는 계약 제안서를 평가하고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을지 FACE 에 추천한다.
- G. FACE 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승인하고 승인 요청서("RA")를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게 보내 승인 받도록 한다. RA 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후원 학부모회에 접수된 계약 제안서의 수
 2. 해당되는 경우,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유.
- H. 후원 학부모회가 상기 절차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 체결이 DOE 에 의해 채택되었을 경우, 후원 학부모회는 반드시 DOE 법률 서비스 담당실에서 후원 학부모회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표준 동의서를 이용해야 한다. 후원 학부모회는 법률 서비스 담당실에 요청할 때 반드시 계약체결을 승인하는 RA 를 첨부해야 한다. 표준 동의 실행은 운영자가 DOE 소유지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기 전 이뤄져야 할 선행 조건이다.
- I. 벼룩시장 운영자와의 계약 조건은 이(2)년간, 두(2) 차례의, 일(1)년 단위 계약 연장이다. 이러한 계약 연장은 오직 후원 학부모회의 재량에 따른다. 후원 학부모회와 벼룩시장 운영자 간의 모든 계약은 후원 학부모회가 90 일(또는 달리 사유가 있을 경우 더 일찍)의 여유를 두고 운영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 J. 가능한 경우, 벼룩시장 계약 시작 및 종료일은 DOE 회계년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벼룩시장이 학년도 중간에 시작될 수는 있으나 계약은 반드시 6 월 30 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 K. 운영자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후원 학부모회에 대금 지불;
 2. 모든 장부와 입증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벼룩시장에서 거둔 모든 수익 및 벼룩시장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지출의 증거가 되도록 함; 이러한 지출이 운영자의 사업체에 벼룩시장에서 거둔 수익 외 추가의 수익을 안겨준 경우, 총 비용을 반드시 기록하여 후원 학부모회 및 DOE 에 제출하고, 비용 할당 방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3. 벼룩시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후원 학부모회에서 요청시 제출;
 4. 벼룩시장의 모든 면을 관리하고 운영;

5. 후원 학부모회와 뉴욕시 교육청, 그리고 뉴욕시를 추가 보험 가입자로 명시한 충분한 종합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 이러한 보험은 뉴욕주 보험부에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의 범위는 학교 시설 담당부 및 후원 학부모회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6. 벼룩시장 장소의 안전 및 보안;
 7. 해당 장소 관리인이 정한 바에 따른 벼룩시장 터 청소
 8. 뉴욕주 세무 및 재무부로부터 프로모터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관련 허가 습득 및 관련 요금 납부;
 9. 모든 개별 참가업체가 적절한 면허와 등록증을 소지하였는지 확인;
 10. 보장된 연 지급금액의 사분의 일(¼)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보장된 연 지급금액의 사분의 일(¼)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 보험금을 계약 체결 시 납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요청 시 본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상기 보증금이나 보증 보험금은,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불이행 시 확정 손해 배상으로 간주된다;
 11. 자리 사용료 납부;
 12. 매년 후원 학부모회에 참여 업체명 및 연락처 목록 제출;
 13. 후원 학부모회가 벼룩시장과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금전 및 로열티는 반드시 예산에 잡혀 학부모회 재무 핸드북과 교육감 규정 A-660 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 현 학년도용 상세한 예산안(지출 계획) 마련. 벼룩시장으로부터 거둔 모든 추정 수익금이 현 학년도 중 지출될 수 없는 경우, 장기 소비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각 학부모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안을 관련 학교장 및 FACE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 매 학년도 시작 시 승인된 예산안을 학부모들에게 제출.
- L. RFP 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벼룩시장 운영업체의 소유주, 이사회 멤버, 또는 풀타임 직원이 해당 벼룩시장 수익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학교의 현재 또는 근래 재학생의 친인척인 경우, 관련 학부모회(들)은 RFP 평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최대 삼(3)인의 학부모 대표(참여 학교 별 1 인을 초과하지 않는)가 RFP 평가 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여 RFP 평가 위원회의 투표 권한이 없는 멤버로서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친인척"이란 학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숙모, 숙부, 조카, 조부모, 손자, 또는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를 의미한다. 또한 벼룩시장 운영자가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고 후원 학부모회의 멤버가 RFP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우,

벼룩시장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학교 중 한 곳의 현재 또는 근래 재학생의 친인척은 벼룩시장 운영업체가 벼룩시장 운영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 이러한 업체의 소유주나 이사회 멤버, 또는 풀타임 직원이 될 수 없다. 본 문단에 사용된 "근래 학생"이란 RFP 선정 절차 중 해당 학교에 재학하였으나, 더 이상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의미한다.

V. 기간 또는 운영 구조에 관계 없이 모든 벼룩시장의 책임, 내부 통제 및 감독

- A. 학교 학부모회가 후원 학부모회 멤버인 학교의 교장은 반드시 학부모회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벼룩시장 운영으로부터 거둔 모든 기금과 로열티 사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B.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공인 회계 및 감사에 사용되는 재무년도는 7 월 1 일에 시작하여 6 월 30 일에 종료된다.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발생하는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 C. 벼룩시장 운영자가 후원 학부모회(연 12 일 이하로 시행되는 벼룩시장의 경우)건 사설 업체이건 간에 반드시 영수증 원본, 모든 현금 영수증 및 지불금을 포함한 모든 입증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D.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후원 학부모회에 지급되는 모든 돈은 반드시 후원 학부모회에서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하며, 후원 학부모회의 현금 영수증 대장에 별도로 기록되고 재무보고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벼룩시장 기금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 FACE 재량에 따라 이러한 기금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학교(들)에 입금되어 관리되도록 한다:
- 운영자는 받는 이가 후원 학부모회로 된 수표를 작성한다;
 - 운영자는 이 수표를 학교장에게 전달한다;
 - 수표 서명 권한이 있는 후원 학부모회 임원은 해당 수표 확인(endorse) 뒤 학교 계좌로 이체한다;
 - 해당 기금은 후원 학부모회와 협의한 후에만 지출될 수 있으며, 교육청 표준 운용 절차 매뉴얼의 일반 학교 기금 챕터에 의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출을 입증하는 관련 은행 기록 및 서류를 후원 학부모회에 제출해야 한다.
- E. 연례 인증 회계/재무 보고
1. 운영기간이나 운영자, 후원 학부모회에 관계 없이 모든 벼룩시장은 반드시 6 월 30 일 종료되는 재무년도의 재무 기록에 대한 인증 회계를 3 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청 감사실(OAG)에서

- 이러한 요건을 면제한 경우만이 유일한 예외이다. 중간 년도에는 독립 회계사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2. 이러한 인증 회계 요건은 연 수익이 \$100,000 미만인 벼룩시장에 한하여 OAG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면제될 경우, 인증 회계 대신 독립 회계사가 이행한 감사가 요구된다.
 3. 인증 회계 또는 감사를 후원 학부모회에 제출하는 것은 사설 운영자의 의무이다. 후원 학부모회는 해당 보고서를 받아 수퍼인텐던트 또는 대리인, 학부모들, OAG 및 FACE 에 재무년도 종료 후 사(4)개월이 넘지 않은 시점(10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보고서는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된다.
 4. 보고 기간 중 벼룩시장 운영자가 복수인 경우, 각 운영자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후원 학부모회는 반드시 각 운영자로부터의 수입을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5. 이러한 필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FACE 에서는 교육청 표준 운용 절차의 일반 학교 기금 챕터에 의거하여 상기 섹션 V.D 에 따라 반드시 벼룩시장 수익금을 후원 학부모회가 직접 수령하여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6. 사분기 보고서
 - a. 십이(12)일 이하의 기간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은 사분기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파악되어, 후원 학부모회 멤버인 학부모회의 중간 및 연례 재무 보고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b. 십이(12)일 이상 기간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의 경우, 후원 학부모회와 운영자 둘 다 반드시 FACE 에서 제공한 서식에 맞춰 사분기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발생하는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해당 사분기 동안 아무런 사업도 실시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태 역시 이 양식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반드시 사분기 종료 한 달 후에 FACE 에 제출한다.
 - c. 사분기 중 벼룩시장 운영자가 복수인 경우, 각 운영자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후원 학부모회는 반드시 각 운영자로부터의 수입을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 d. 이러한 사분기 수입 및 지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FACE 에서는 교육청 표준 운용 절차의 일반 학교 기금 챗터에 의거하여 상기 섹션 V.D 에 따라 벼룩시장 수익금을 후원 학부모회가 직접 수령하여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기금 사용

커뮤니티 학군 학교 소유지에서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후원 학부모회는 이러한 벼룩시장에서 조성된 기금을 동일 학군 관할 하에 있는 타교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립 고등 학교 소유지에서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후원 학부모회는 이러한 벼룩시장에서 조성된 기금을 동일 보로에 있는 타 공립 고등학교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 공립 특수학교 소유지에서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후원 학부모회는 이러한 벼룩시장에서 조성된 기금을 동일 보로에 있는 타 뉴욕시 공립 특수 교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VI. 불량 업체의 벼룩시장 또는 시티마켓 프로그램 참여 종료 절차

- A. 후원 학부모회는 벼룩시장의 운영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떤 업체의 행위나 특성 및/또는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가 해당 업체를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참여를 종료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다.
- B. 후원 학부모회에서 운영자 측에 어떤 업체의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하도록 지시할 경우, 이 업체는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 참여가 즉시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업체, 또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우, 후원 학부모회는 해당 업체가 그 불량한 행위,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거하였고,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에 다시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 참여를 재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C. 어떤 업체의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후원 학부모회의 지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해당 업체가 참여한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학군 학교, 뉴욕시 특수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경우, 해당 업체는 우선 FACE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FACE 의 결정이 해당 업체에 불리한 경우, 업체는 이러한 결정을 교육청 조달부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 이의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업체는 참여 종료 지시를 받은 벼룩시장이나 시티마켓 프로그램 참여가 금지된다.

VII. 허가 취소

교육감이나 대리인은 본 규정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 취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VIII.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Family and Community Empower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49 Chambers Street - Room 503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2323

Fax: 212-374-0076